

대법원 2016. 4. 28 선고 2015다7839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6. 4. 28 선고 2015다78390 판결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12. 3 선고 2015나3673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

피고, 피상고인 1. B

2. C

판결 선고 2016. 4. 28.

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12. 3. 선고 2015나3673 판결

주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

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이상훈

대법관김창석

주심대법관조희대

대법관박상옥